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92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성일종·강선영·장동혁

인요한 • 박덕흠 • 고동진

김승수 • 이달희 • 최수진

송석준·김상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 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 임.

이에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 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

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 공 임상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임상교수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① 대학	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①
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	
床敎授要員)을 둔다. <후단 신	
<u>설></u>	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임
	<u>상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공</u>
	공임상교수요원"이라 한다)을
	<u>둘 수 있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